

행정개선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호서대학교 행정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교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5명, 직원 5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별도로 1명의 간사를 둔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며 회무를 통무한다.

제4조 (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회 참석에 소요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회의소집) 위원중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6조 (임무)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교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개선을 위한 안건을 취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제출된 안건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한다.

제7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 심의한다.

1.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대책(안)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이에 따른 연구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기록하여 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회의록에는 참석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효력발생) 심의 및 의결사항은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재가를 받아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2015. 5. 1, 2019. 8. 1., 2021. 3. 1.)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1)

제1조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지원처’를 ‘사무처’로 한다.

부 칙(2019. 8. 1.)

제1조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처’를 ‘총무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